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정 2002. 03. 25
개정 2004. 01. 30
개정 2005. 04. 22
개정 2006. 04. 28
개정 2006. 10. 27
개정 2007. 03. 08
개정 2007. 10. 24
개정 2009. 04. 10
개정 2009. 09. 17
개정 2021. 05. 04
개정 2024. 07. 24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정보처리학회 정관 제15조에 의한 수석부회장을 선출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선거관리) ① 수석부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의 총괄, 관리는 한국정보처리학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칭한다)에서 관장한다.
② 선관위는 총회 3개월 이전에 학회장이 구성한다.
③ 선관위는 10명 이내의 학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선관위원장”이라 칭한다)은 전임회장이 된다.
⑤ 선관위의 의결은 재적선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⑥ 선관위는 수석부회장 선출과 관련한 모든 업무의 집행 및 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며, 외부의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⑦ 선관위원은 선거를 관리함에 있어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 3 조(선거공고) ①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다음의 제반사항을 공고한다.
1. 선거일정
2. 입후보자
3. 당선자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선거일정은 투표일 30일 전에 공고한다.

제 4 조(선거권) 선거권은 총회 6개월 이전까지 정회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선거인단에 있다.

제 5 조(피선거권) 학회 정회원(평생회원 포함)으로써 이사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학회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저명인사로서 전임회장 및 임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제 6 조(입후보 등록) ① 입후보자의 등록은 투표일전 10일부터 3일간 실시하며, 등록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선관위에 신청해야 한다.
1. 수석부회장 입후보 등록신청서
2. 추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추천서
3. 소견서

②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은 선관위에서 배부하며 제3호에 포함될 내용은 선관위에서 공고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기간만큼 순연한다.

제 7 조(선거방식) ① 수석부회장 선거는 총회에서 직접 선거로 실시한다.
② 학계 외부의 인사로 수석 부회장을 선출할 때는, 임기가 시작되는 당해연도에 선출할 수 있다.

제 8 조(당선자의 결정) ① 제 7조에 의한 투표에서 최다득표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최다득표 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제 9 조(당선자 공고 및 발표) ① 개표 종료 결과 당선자가 확정되면 선관위원장은 당선자를 발표한다.
② 선관위원장은 회원에게 당선자를 공고한다.

제 10 조(기타 사항) 한국정보처리학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가 정한다.

부 칙

1. 본 규칙은 2002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칙은 2004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칙은 2005년 0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칙은 2006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칙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칙은 2007년 03월 08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칙은 2007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칙은 2009년 0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칙은 2009년 0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칙은 2021년 05월 04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칙은 2024년 07월 24일부터 시행한다.